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945
----------	------

2021년 11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1. 10. 28. 고병국 의원 발의 (2021. 11. 1. 회부)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는 불비한 상황임. 이에 조례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신설).
-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자치구의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예산지원 근거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나.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는 5개뿐으로, 이 개정안은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생략) <신설>	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u>운영</u>) ① (생략) ② <u>시장은 구청장이 자치구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1조(----- ----- <u>운영 등</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u>설치</u> <u>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u> -----.

다.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설치하는 집수리 지원센터만 규정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 사무는 현장밀착형으로 자치구 사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도,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규정코자 하고,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1.10.6.) 심의 결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있으나, 센터의 위탁사무에 포함된 집수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으나¹⁾, 이 개정조례안으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락처	02-2180-8216
이메일	cjh1786@seoul.go.kr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무인 집수리지원센터로 시장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외 개별법령과 조례에도 위탁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또한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제시됨.

붙임

집수리 지원센터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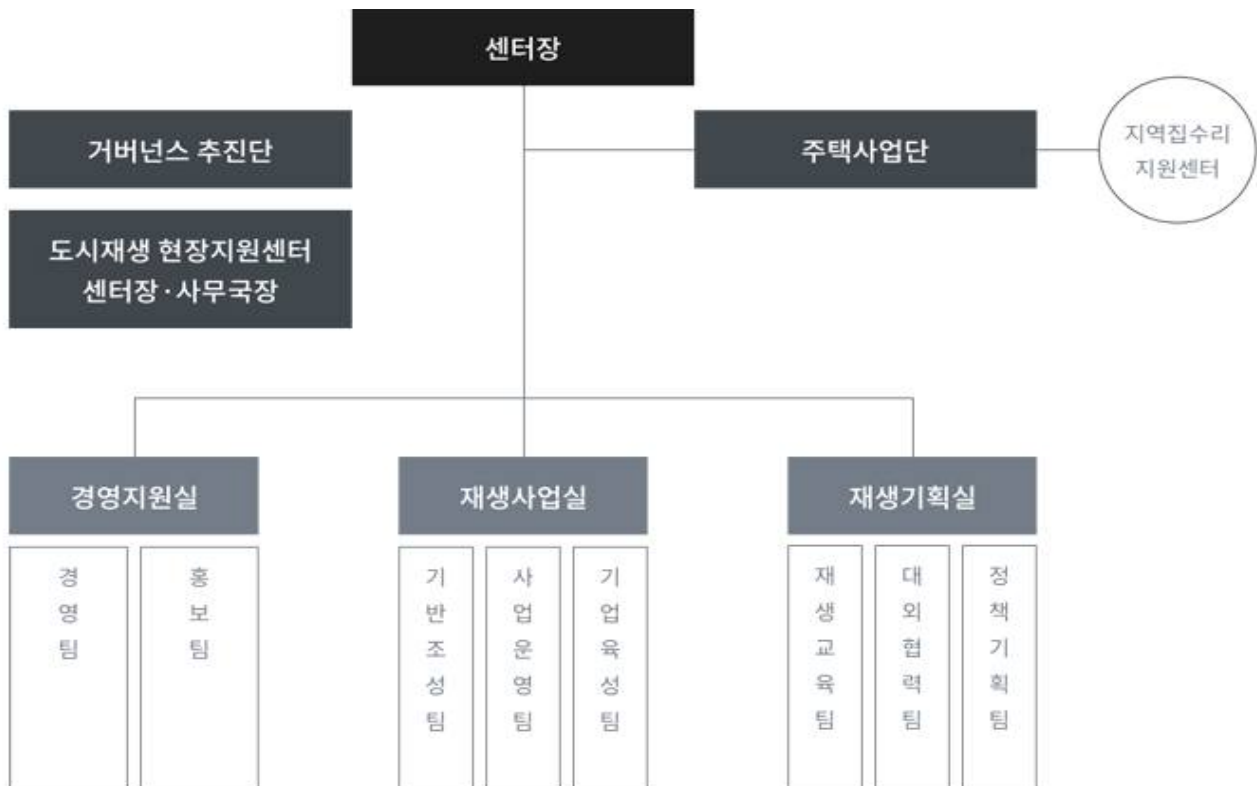
○ 운영방식 : 市 주거재생과의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내 포함

구분	중앙 센터	지역 센터
예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민간사무위탁 ※ '21년 기준 사업비 17,500만원	인건비 : 민간사무위탁 운영 및 사업비 : 자치구 집행(시비지원) ※ '21년 기준 각 2,000만원
장소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설치	·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내 설치 · 중랑구, 관악구 : 독립공간 운영

○ 위탁기관 : (주)커런트코리아 외 1개사

○ 위탁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운영조직 :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



2021년도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

○ 추진근거

- `16.01.07.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8.04.30.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9.03.05. :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계획
- `19.03. ~ :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 및 제11조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한다.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